

2024년도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

<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 대응 TF, '24.08.16.(금) >

- ◆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
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집중 관리 필요
 - 지자체 합동전담대응팀 적극 운영, 시설 감염관리 점검 강화
 - 감염취약시설 내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(합동전담대응팀)
신고, 보건소·시설 협력하여 환자 관리 및 감염관리 현황 점검 지속

□ 관리지침 개요

- (제정) '24년 5월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관심) 에 따른 기존 대응지침(지자체용) 폐지에 따라 관리지침 신규 제정
- (개정) 코로나19 유행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필요

□ 주요 개정사항

-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
 - (평시)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①증상 모니터링 지속, ②유증상자 자가진단키트(RAT) 활용, 유증상자(입원·입소자) 진료 및 격리 권고, 유증상자(종사자) 진료 및 업무배제 권고, ③감염관리* 및 개인위생 수칙 강조
 - * 코로나19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마련·배포(7.26., 8.2.)
 - (발생 신고) 시설에서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(합동전담대응팀) 신고 및 보건소 관리 시작
 - (감염관리) 감염 의심되는 입원·입소자 격리 권고 및 접촉자 관리(증상 모니터링), 개인위생 및 실내환경 청소·소독·환기(2시간마다 10분) 강화
 - (역학조사) 2명 이상 보건소 관리中에 10명 이상 발생 시 합동전담대응기구 가동하여 집중관리 및 (현장)역학조사 등 신속 관리

붙임

2024년 코로나19 관리지침 신규대조표

구분	2024년(6.20.)	2024년 개정(8.16.)	비고
총론	(신설)	7. 감염취약시설 관리 가. 배경 나. 대상 다. 대응체계 라. 지자체 합동전담대응기구 운영 마.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관리	